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규남, 고광민, 곽향기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신복자,
이성배, 최민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제대군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미국과 달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며,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이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및 면제혜택을 받고 있음.
-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물론 중기복무,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제대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면제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함(안 제5조제1항제19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19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8. (생 략)	1. ~ 1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9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</u>
<u>19. (생 략)</u>	<u>20. (현행 제19호와 같음)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(관람료의 면제) 제1항제19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현재 서울시립박물관은 제4조(관람료)제1항¹⁾에 따라 무료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규정신설에 의한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관람료)제2항²⁾에 따라 박물관³⁾ 자체 기획전시나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,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유선조사 결과 현재 까지 관람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, 이에 향후 발생할 개연성 또한 드물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으로 함
- 또한, 동 개정안은 정책에 따른 혜택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관람료) ① 박물관의 **관람료는 무료를 원칙**으로 한다.
2)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관람료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3) 서울역사박물관, 청계천박물관, 서울생활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, 서울우리소리박물관, 서울공예박물관 (총 6개 박물관)